2013년도 업무계획

2013. 4. 18.



____ 목 차 ____

I. 일반현황1
Ⅱ. 지난 5년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4
Ⅲ. 정책목표 및 주요정책 추진계획5
1. 정책 환경과 정책 목표5
2. '13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7
IV. 국정과제 이행계획 ······28
V. 부처간 협업과제 ······29

I. 일 반 현 황

1. 연혁·임무

□ 연 혁

【 (구) 체신부·정보통신부 】

- '48년 정부수립과 함께 **체신부**로 출범
- '94년 체신부 →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
- ※ 당시 과학기술처, 공보처, 상공자원부에 분산된 ICT 관련 정책기능을 일원화

【 (구) 방송위원회 】

● '00년 **방송위원회**(방송위('81년)+종합유선방송위('92년)) 설립(방송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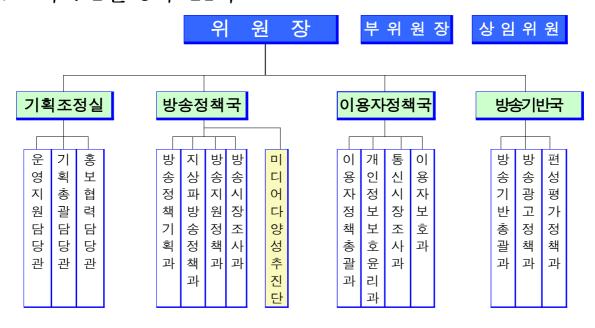
【 방송통신위원회 】

- '08.3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(방송위원회+정보통신부, 방통위 설치법)
- ※ (구)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지경부, 행안부, 문화부로 각각 이관
- '12년 조직개편(방송광고 이관 및 방송시장조사 기능 신설)
- '13년 조직개편(방송규제 정책·금지행위 조사제재 및 이용자보호 정책 담당)
- ※ 방송통신 융합·통신·전파·네트워크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

□ 임 무

- 지상파방송 및 종편·보도PP 정책
-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·제재
-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·시행
-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·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
- **방송광고, 편성 및 평가**정책 수립·시행 등
- 미디어다양성 정책

2. 조 직 : 1실 3국 14과



※ ■ 색은 임시기구

3. 인원 및 기능

□ 인 원

('13.4월 현재, 단위 : 명)

총 계	정무직	일반직	기능직
201	5	179	17

□ 부서별 기능

부 서	주 요 업 무
기획조정실	O 정책 및 예산(기금포함)의 종합·조정, 조직·정원·인사 O 공영방송 임원 추천·임명 O 대국회 업무, 법무·규제개혁, 부내정보화 및 재무관리 O 위원회 정책 홍보 및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O 외국정부·국제기구 등과의 교류·협력
방송정책국	o 방송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o 지상파방송 및 종편·보도PP 정책 o SO, 위성방송 허가재허가 및 관련 법령 제·개정 사전동의 o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·산정 o 방송용 주파수 관리,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제재
이용자정책국	O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O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및 방송통신 분쟁 조정알선 O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·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O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
방송기반국	o 방송 소외계층 지원정책 수립 추진 o 방송광고의 운용·편성, 방송광고 균형발전 o 방송 프로그램 운용·편성, 방송평가제도 운영

4. 주요 유관기관

기 관 명	대표자	주 요 기 능	근 거 법
한국방송공사 (KBS)	길환영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신용섭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교양분야 방송 콘텐츠 제공 및 교육방송에 관한 연구 개발 등	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김문환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	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
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(KOBACO)	이원창	방송광고 판매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	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관한법률 제24조

5. 소관 법률

분 야	법률명
	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	o 방송법
비스 오후	o 한국교육방송공사법
방송·융합	o 방송문화진흥회법
	o 한국방송공사법
	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
정보보호	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6. 재정

- 세출예산 규모 : ('12년) 1,699억원→ ('13년) 2,036억원(337억원 증)
 - (재원별) 일반회계 515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521억원
 - (기능별) 인건비 151억원, 기본경비 38억원, 주요사업비 1,847억원

Ⅱ. 지난 5년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

1. 주요 성과

- □ (방송통신융합) IPTV 가입자 630만명을 확보('12.12월말)하고, 방송 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('10.3월)하는 등 방송통신융합 기반 마련
- □ (방송) 종편PP 사업자 선정('10.12월),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('12.8월) 및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('12.12.31.)를 통해 방송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
 - 중소기업 홈쇼핑('11.3월)·장애인 복지 채널('1211월) 선정 등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
- □ (통신) 기본료 인하 등 지속적인 이동통신 요금인하 추진, 4세대 이동통 신(LTE) 전국망 구축('12년) 등 세계 최고의 모바일 네트워크 확보
- □ (이용자보호)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('11년), 방송법상 금지행위
 제도 도입('12년) 등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증진
- □ (국제협력) OECD 장관회의 개최('08년), '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전권회의(총회) 유치 등 ICT 글로벌 리더십 강화

2. 평 가

- □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, 방송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
 -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, 지배구조 개선 등 미디어의 공공상·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필요
 - 기존 규제 중심의 이용자보호에서 탈피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등 이용자 중심의 정책 강화 필요

Ⅲ. 정책 목표 및 주요정책 추진계획

1. 정책 환경 및 목표

□ 정책 환경

- 방송·통신·인터넷 등 미디어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, 신규 서비 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등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
- 공영방송의 원활한 **공익적 기능** 수행 및 **경영효율성 제고** 등의 수 요가 지속 제기
- 시청률 중심의 매체 간 경쟁으로 인해 방송의 역기능이 부각되고, 방송시장의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중소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여건 악화
- 시장포화에도 불구하고 N스크린, 스마트TV 등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용자 민원이 복잡화
 -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,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간 적정 수익배분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필요성 지속 제기
- 적극적 이용자를 중심으로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반면 장애인·어 르신 등 취약계층과의 **스마트 정보격차** 발생
 - ▶ 방송의 공공성 제고, 방송시장 활성화 및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등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환경 조성 필요
 - o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기회 확대, 인력 양성 등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 - o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, 개인정보보호 및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이용자 권리를 최대한 신장하기 위한 법·제도 마련

□ 비전 및 정책 목표

(비전)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

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

- 방송의 공공성·공정성 확보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환경 구현

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

- 방송광고시장 기반 조성,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,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시장의 성장 기반 마련

●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

-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, 취약계층 지원 및 불공정·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규제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환경 조성

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

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

-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
-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
- 미디어 다양성 증진
-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

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

- ⊙ 규제 최소화로 융합산업 지원 이용자 편익위주의 규제
- 소규모 방송서비스 활성화
-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
- 방송광고시장 기반 조성

국민행복을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

- ◎ 취약계층 지원
- 개인정보보호 강화
- ○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제한

2. '13년도 주요정책 과제 추진계획

1. 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

□ □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

□ 추진 배경

- 국회, 시민단체 등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
-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공영방송의 **공익적 역할**을 **강화**하고,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·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

□ 주요 추진과제

- (지배구조)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에 있어 **사회의 다양한 가치**를 포용하고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워
 - 국회 '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'에서 논의 지원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·분석 등
- (재원) 공적재원 활용의 투명성·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 마련

〈공영방송 소유구조 및 운영재원('12년)〉

 구분	소유구조		운영	재원	
T E	エポージ	수신료	국고‧기금	방송광고	기타
KBS	정부(100%)	38.5%	0.7%	41.0%	19.8%
EBS	정부(100%)	6.4%	21.5%	13.7%	58.4%

● (EBS 역할 강화) EBS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EBS의 공교육 콘텐츠 및 채널 다양화

② │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

□ 추진 배경

● 시청률 경쟁의 심화에 따른 막말, 선정·폭력적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시청자 보호와 정서함양 등 품격제고 필요

〈 막말, 선정·폭력적 드라마 등 심의제재 현황 〉

구 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법정제재 건수(전체)	233	388	218	404	371
막말 등 방송언어 위반건수	3	29	30	59	27
선정성·폭력성 위반건수	1	4	13	20	25
계	4(1.7%)	33(8.5%)	43(19.8%)	79(19.5%)	52(15.9%)

[※] 과징금 부과 건수 : '11년 12건(CJ E&M 등 10개 방송사), '12년 1건(우리홈쇼핑)

- (방송언어 순화)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캠페인 특집 프로그램 제작・ 방영 추진(5월, 10월), 방송언어사용 실태조사 발간 등
 - (방송사 자율규제 강화) 방송사 자체심의운영 실태 점검(매월), 심의 사례집 발간·배포,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(매체별 각10회 이상) 등 추진
 - (방송심의 강화) '모니터링 점수공표',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고도화 (녹화채널 9개 증설) 및 심의제도 개선 연구
 - ※ 막말이나 선정·폭력성 프로그램, 동일·반복적 위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제재조치 강화, '실효성 있는 심의·제재 방안'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추진(5월~11월)
- (방송접근권) 외국인 주민 등 방송소외 계층에게 우리 문화와 생활정 보를 알릴 수 있는 영어FM*의 다국어 방송(중국어·일본어 등) 허용
 - * 영어FM은 '09년 신규 허가되어 서울, 부산, 광주, 제주 등 4곳에서 운영 중
- (지역방송) 융합 서비스 등장에 따른 지역성 구현방안 마련 및 자 체제작 활성화를 위한 편성제도 개선

③ 미디어다양성 증진

□ 추진 배경

● 방송의 여론다양성 증진(방송법 제35조의4)과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 체제 구축(동법 제35조의5)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·제 도를 개선

- (시청점유율 제도 개선)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고정형TV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추진
 - 스마트TV, 스마트폰 등 조사방법 개발 및 시범조사 실시
 - TV, 라디오, 신문, 인터넷 등 미디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 시범산출 및 활용방안 마련
 - 여론다양성 증진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「(가칭)**미디어다양성 증진법**」제정

< 2011년 주요 지상파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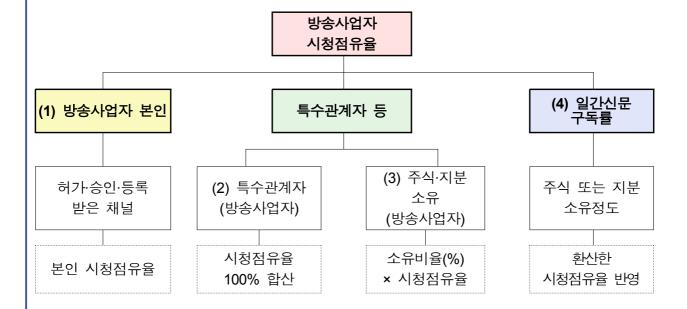
	KBS	MBC	SBS	지역민방
지상파시청점유율	32.107%	14.364%	7.596%	6.652%
계열PP 시청점유율	3.841%	4.008%	3.577%	0.019%
소계 (지상파+계열PP 시청점유율)	35.948%	18.372%	11.173%	6.671%

- (경쟁상황평가) 매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
- (콘텐츠 다양성 유도) 종편PP의 '12년도 이행실적 점검, 재승인 심사계획 마련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
 - ※ '14년 JTBC, 채널A, TV조선, MBN 재승인 심사 예정

[참 고]

미디어다양성 증진

□ 시청점유율 산정 절차 및 방법



② 방송사업자의 매체간 합산영향력지수 산정 사례



④ 비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

□ 추진 배경

● **방송광고**의 **공공성**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권을 침해하는 광고위반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, **중소방송사**의 **균형발전**을 지원

□ 주요 추진과제

- (간접광고) TV 드라마에 간접광고가 급증하여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 하고,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화
- (심의 내실화)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인 력을 증원하고, 반복위반 시 처벌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

< 반복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>

·방송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-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**과태료 금액의 2배까지 가중 적용** 가능

● (균형 발전) 중소방송사(지역·종교방송) 광고를 중앙방송사 광고와 결합판매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방송의 균형발전 지원

<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현황 >

구 분	공영미디어렙	민영미디어렙
방송사	KBS, MBC	SBS
결합판매 지원대상	지역MBC, EBS, 종교방송 등 30개사	지역민방, OBS 등 10개사
결합판매비율	12.09%	7.28%

- 미디어렙법(제18조)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 및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
- (공익광고 활성화)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 공감대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, 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실천의식 제고

[참 고]

중소방송 상생협력 체계 구축

- □ 개 요
 - o 방송의 공정성·공공성을 확보하고, 중소방송 등 방송균형발전을 위해 판매대행(미디어뎁*)제도를 운용하고, 중소방송지원정책을 시행
- □ 주요 내용
 - o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
 - (구성) 지상파방송 추천 3인, 중소방송 추천 3인, 법조계·학계· 회계사 3인, 기타 2인 등 총 11인(미디어렙법 제23조)
 - (역할)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, 중소방송 지원 이행실적 심의
 - o 중소방송 결합판매 지원 및 이행실적 점검
 - 결합판매 지원 비율은 미디어렙별로 5년간의 지상파광고매출액 대비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매년 방통위가 고시
 - ※ 결합판매 비율('12년) : 공영미디어렙 12.0943%, 민영미디어렙 7.2788%
 - 매년 3월, 방송·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실적 및 이행계획,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광고판매 실적 등 점검

〈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대상 〉

미디어렙	중앙3사	네트워크 지역(27개)	중소지상파방송사(13개)
공영렙	KBS	_	EBS, 경인, 극동, 불교, 원음
(코바코)	MBC	지역MBC(18개)	CBS, 평화, YTN라디오, 영어방송(3개), 경기
민영렙	SBS	지역민방(9개)	OB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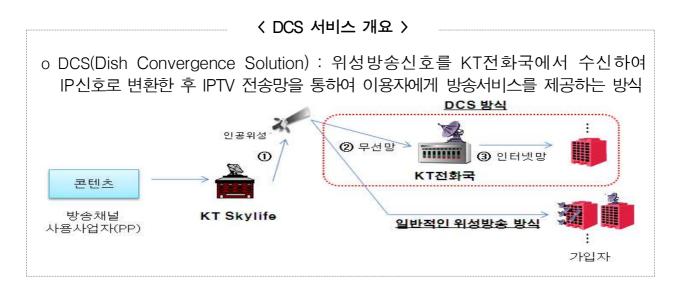
2.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

□ □ 규제최소화로 융합산업 지원

□ 추진 배경

-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, 위치정보 서비스 등 개인정보 활용기반 서비스가 **활성화**될 수 있는 **여건을 마련**
 - 신규 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체계를 개선

- (개인정보 활용 절차의 투명화)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,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
 -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위치정보 서비스(예 : 길찾기)에 대해서는 허가·신고를 면제하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여 진입규제 완화
- (신규 융합서비스 지원) 접시 없는 위성방송(DCS), N스크린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융합서비스 제도화 등 지원



중소규모 방송서비스 활성화

□ 추진 배경

2

● 방송의 다양성 보장, 융합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공동체 라디오방송 활성화, 라디오 방송매체의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

- (지역 주민밀착형 방송 활성화) 가청권 확대, 추가 사업자 허가 등 공동체라디오방송* 활성화 방안 마련
 - * FM 주파수 대역에서 10와트 이하의 소출력으로 소규모지역(시·군·구 일부)을 대상으로 음악, 문화,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
 - ※ 출력증강(1W→10W), 허가기간 연장(3년→5년), 기금 사업 지원 등 검토 <공동체라디오방송 현황>

방송국명	법인명	방송구역	방송사항
관악FM	(사)관악공동체라디오	관악구 일부	
마포FM	(사)마포공동체라디오	마포구, 서대문구 일부	_
성남FM	(사)문화복지미디어연대	성남시 일부	음악, 문화,
- 금강FM	(사)금강에 프엠 방송	공주시 일부	정보제공 (지역관련
 성서FM	(사)성서공동체에프엠	대구 달서구 일부	소식에 한정)
영주FM	(사)영주에프엠방송	영주시 일부	,
광주FM	(사)광주시민방송	광주 북구 일부	

- (라디오 경쟁력 강화) 라디오 방송 활성화와 시청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라디오 방송 규제 개선 추진
 - 지상파 라디오 디지털 전환 정책방안 마련
- (DMB 활성화) 매체 특성, 광고 구조,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한 신규 수익모델 발굴 및 차세대 양방향 DMB 상용화 지원

③ │ 콘텐츠 제작·유통 지원

□ 추진 배경

o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조성을 위해 애니메이션 유통 확대 지원, 외주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방송프로그램 유통 정보 표준화 추진

□ 주요 추진과제

- ① 애니메이션 유통 확대 지원
 - (편성의무) 방송법 개정('12.1월)에 따라 '13년부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종편PP와 전문PP까지 확대·시행, 신규 편성실태 분석('13.9월)
 ※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 효과 예상

〈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 〉

- ■애니메이션은 광고수익이 저조하여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로 편성 ※ '11년 KBS의 애니메이션 구매예산은 24억원이나 광고판매액은 0.1억원에 불과
 - ※ '12년 KBS는 신규 애니메이션의 99%를 어린이 주시청시간대(7~9시, 17~20시)에 방영한 반면, SBS는 1%에 불과하고, MBC는 전무

〈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〉

구 분	지상파방송	종편 및 애니전문PP
국내 애니메이션 편성	애니메이션 중 45% 이상	애니메이션 중 30% 이상
신규 애니메이션 편성	총 방송시간의 1% 이상	총 방송시간의 0.3~1% 이상

- (편성비율)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는 국내 애니메이션 육성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 도입 검토
 -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방영료 상승 등 진흥 효과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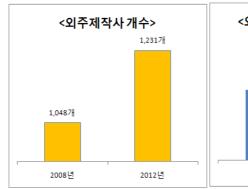
< 편성비율제도를 통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효과 >

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 2.2배 증가 : '05년(2,338억원)→'10년(5,143억원)
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창작제작인력 증가 : '08년(1,801명)→'10년(2,282명)
 ※ EBS 뽀로로 산업효과('11년) : 누적매출 1조원, 취업유발효과 4만3천명

② 외주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

- (외주제작 활성화) 사업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지원, 외주 인정기준 개선 등의 외주제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
- 방송 3사 대표, 드라마제작사 협회 대표, 독립제작사 협회 대표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 도출
- (공정거래 환경)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 분쟁조정 대상규정에 외주제작사 포함(방송법 개정)

〈 외주제작사 현황 〉







③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표준화

- (목적) 사업자별로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가 달라 온라인 유통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표준화 필요
 - ※ 미국 프로그램표준(PSIP: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) 모든 지상파에 의무화('08년), 유럽방송연맹(EBU) P-META 개발('06년), 일본 J-META 개발('04년)
- (내용) 방송프로그램 분류기준을 마련하고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를 통한 국내 표준화('13.5~12월) 추진
- (활용)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추적을 통해 불법복제 예방 등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

④ │ 방송광고시장 기반 조성

□ 추진 배경

■ 대표적인 창조산업인 광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하여
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기회를 확대하고,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

□ 주요 추진과제

- (중소기업 방송광고) 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하여 혁신형 중소기업*에게 TV·라디오 광고요금을 70% 할인하고, 광고 제작 및 마케팅 지원
 - * 혁신형 중소기업(벤처기업) : 기술지향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은 기업

<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실적 >

구 분	'11년	'12년*	'13년(계획)	계
기업 수(개)	149	196	220	565
지원효과 (억원)	146	146	171	463

^{※ &#}x27;12년에는 민영 미디어렙 분리로 사업추진 다소 지연

● (인력 양성) 맞춤형 교육과정, 체계화된 교육 및 실습지원을 통하여 미디어 광고제작 전문인력 양성

< 광고 전문인 교육 계획 ('13년) >

구 분	교육인원	교육과정	비 고
온라인 교육	5,000명	55개 강좌	광고기획, 카피제작 실습, 광고효과
오프라인 교육	3,200명	25개 강좌	국제광고인 자격, 디지털 광고제작

- (광고 인프라) 완성도 높은 방송광고물과 시장분석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개방하여,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제공
- (광고 아카이브)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DB를 구축하고, 광고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※ 광고정보센터: TV·라디오, 인쇄 광고물 등 30만건 소장 (연 2.5만건)

[참 고]

국내 광고시장 현황

- □ '12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9.7조원으로 GDP 대비 0.7% 정도
 - o 전체 광고시장에서 **지상파방송광고**와 **인쇄매체**(신문잡지)시장이 각각 **2.2조원**으로 **가장**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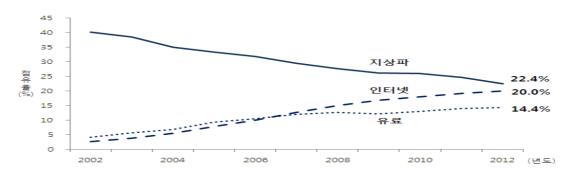
< 2012년 매체별 광고매출액 현황 >

지상파방송			유료방송	인쇄매체	인터넷	기타 (모바일	전체
TV	라디오ㆍ기타	소계	(종편포함)	(신문,잡지)	신다것	포함)	건제
1.9조	0.3조	2.2조	1.4조	2.2조	1.9조	2.0조	9.7조

[출처 : 미디어렙 제출 자료, 제일기획]

□ 지상파 방송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, 인터넷 광고는 급증하고 있으며, 유료방송은 14%에서 정체

< 광고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 >



□ **지상파 3사**가 지상파 **광고의 74**%를 차지하고 있으며, '12년부터 **민영 미디어뎁**의 출범으로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

〈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 및 점유율 현황('12년) 〉

구분	공영미디어렙						민영미디어렙			_	
방송사	KBS2	MBC	지역 MBC	교 종 항	영어 방송	EBS	기타	SBS	역 지민	OBS	계
금액 (억원)	6,218	4,911	2,699	563	11	353	263	4,962	1,569	274	21,823
점유율	28.5%	22.5%	12.4%	2.6%	-	1.6%	1.2%	22.7%	7.2%	1.3%	100%

3.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

□ │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

- (1)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점검
- □ 추진 배경
 - 방송통신서비스가 복잡·다양화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이용자 이익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**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**
- □ 주요 추진과제
 - (통신서비스) 가입·이용·해지절차 관련 이익저해 요소 점검·개선
 -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및 요금부과 행위 점검
 - 장기간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점검 및 개선
 - 서비스 해지 지연·제한행위 실태점검
 -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분석 및 과금 검증시스템 구축·운영
 - 데이터 해외로밍 요금폭탄 예방 캠페인 전개 및 관련 이용약관 개선
 - (방송서비스) 유료방송 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점검·개선
 - 가입자 임대 장비(셋톱박스 등)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 이후 요금청구, 원가에 비해 과다한 임대료 청구 등 부당 요금 징수행위 등 조사
 - 유료방송에 개별 가입한 가구가 단체계약 사실을 모르고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문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

(2)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제고

□ 추진 배경

- 이동통신 사업자간 소모적 이동전화 보조금 지급경쟁을 억제하여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,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방지
 - '08년 이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**과징금 부과, 신규**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쟁 반복
 - ※ '10.9월(과징금 : 188.8억원), '11.9월(과징금 : 136.7억원), '12.12월(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: 66일, 과징금 : 118.9억원), '13.3월(과징금 : 53.1억원)

- **(상시감시 강화)** 과다 보조금 지급 등 통신 시장의 과열수준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**통신시장 모니터링 강화**
 - 시장과열을 촉발하는 온라인 불·편법 영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통신사의 자율적 시장 감시 및 정화활동 유도
 - * '13.2월부터 주6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호기(呼價)에 의한 보조금 수준 조사 중
 - (현장조사) 주6회 330여개 판매점, (온라인) 주5회 144개 사이트조사
- (조사 선진화) 조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간 및 표본추출 기준 등 조사기법을 개선하고,
 -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차등 제재하기 위한 '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' 마련
- (규제 실효성 제고)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과열 주도 사업자 선별·가 중 제재 방안 검토

[참 고]

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현황

- □ (규제 연혁) 단말기 과소비 및 자원 낭비,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 차별,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용 전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대해 짐에 따라, '00.6월부터 '08년 3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 금지
 - o '08년 3월 관련 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허용하되,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만 사후제재

〈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〉

구분	보조금 규제 제도	비고
'00. 6	이용약관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금지	_
'03. 3	전기통신사업법에 보조금 금지 법제화	3년 일몰 규제
'06. 3	전기통신사업법 보조금 규제 2년 연장	18개월 이상 가입자 보조금 허용
'08. 3	보조금 규제 일몰	의무약정제 도입
현재	보조금 관련 이용자 차별 규제	인당 27만원 초과 보조금 금지

- □ (현행 규제 제도)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전기통신 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
 - ◆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①항제5호 이용약관과 달리.....제공하거나,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 - ◆ 시행령 제42조(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)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......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제5항. 마호. 1)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
 - o 특정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가입자 1인당 평균예상이익 (27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,
 -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판단
- □ (제재 현황) 현재까지 4차례('10.9월, '11.9월, '12.12월, '13.3월)에 걸쳐 이통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조사 및 제재
 - ※ '10.9월(과징금 : 188.8억원), '11.9월(과징금 : 136.7억원), '12.12월(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: 66일, 과징금 : 118.9억원), '13.3월(과징금 : 53.1억원)

(3)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

□ 추진 배경

- 현행 전기통신사업법·방송법 등은 입법의 목적이 관련 산업의 진흥과 제 공 사업자의 규율에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
 -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**선진화된 법체계 구축** 필요 ※ 대선 공약: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

□ 주요 추진과제

● 현행 전기통신사업법,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산재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, 이용자 역량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등을 추가한 「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」 제정 추진

● 법안 주요내용

- (이용자 역량 강화)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,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
- (이용자 보호영역 확대)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현행 방송통신사업자에서 제조사·포털·판매점 등으로 확대
- (분쟁 처리절차 개선) 방송사간 분쟁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집단피해 발생시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도입
- (이용자보호원 설립)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용자·사업자간 민원처리, 분쟁조정 및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립

② 시 취약계층 지원

(1) 소외 계층 방송접근권 제고

□ 추진 배경

-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언제 어디서나 방송시청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
 - '12년말 기준 **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**는 전체 296개 방송사(지상파, SO, PP 모두 포함) 중 **61**개사(약 20%)에 불과
 - 시·청각 장애인의 TV시청을 보조하는 수신기 보급률은 전체 시·청각 장애인('12년말 약 54만명) 대비 약 **19**% 수준에 불과
 - ※ 대선공약 :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

- (장애인방송 확대) 시·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·자막·화면해설방송 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까지 확대하고 제작비 지원('13년말 전체 52% 수준인 153개사)
 - ※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: 34억원('12년) → 44억원('13년)
- 지상파는 '15년까지 자막 100%, 수화 5%, 화면해설 10% 편성의무 부과(유료방송의 경우 '16년까지 지상파의 50~70% 수준 편성목표 달성)
- (수신기 보급)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의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수신기 보급을 확대('13년 14,510대, 28억원)
 - ※ '17년까지 누적보급률 40%까지 확대 추진
- (발달장애인용 방송물 제작) 장애인 중에서도 방송이해도가 낮은 발달장애인의 방송 이해를 돕는 자막 음성해설 제공 프로그램 시 범 제작('13년 하반기, 5편 내외)
- (공익·장애인채널) 공익·장애인채널의 도입 취지에 적합한 전문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시 활용
 - ※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(3개): 사회복지, 과학·문화 진흥, 교육지원 분야

(2)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

□ 추진 배경

● 어르신·장애인·주한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일반 인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역량 강화

- (이용자 교육 강화)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교육*, 미디어 체험·제작 교육 등 이용자 대상 교육 확대
 - * 장애인협회, 노인복지관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전문강사단이 현장 방문교육 실시
- (피해예방 매뉴얼 개발) 어르신·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"방송통신서비스 이용·피해예방 매뉴얼" 개발·배포
 - ※ 노인복지관, 장애인 협회, 다문화가족지원 센터, 지자체를 통한 오프라인 보급 및 이용자전용 홈페이지(www.wiseuser.go.kr)를 통한 온라인 보급 병행
- (외국인 서비스 이용 지원) 이통사 외국인 전용매장 확대, 고객센터 다국어 안내인 배치 및 이통사·유료방송사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 유도
- (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) 춘천·대전·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상상력과 창조성을 배양하는 시청자 참여·소통 인프라 확충
 -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**광역권 중심**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속 확대 추진
 - ※ 센터 공간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, 방통위는 리모델링·시설장비비 총 146억원을 지원('13년), 운영비는 6(방통위):4(지자체) 매칭 사업으로 추진

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

- □ 시청자미디어센터 개요
 - o 소외계층·시청자가 방송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·방송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는 시설
 - o 부산('05년)·광주('07년)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, 시청자 참여·소통의 공간으로서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는 지역 공공기반시설로 자리매김
 - <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>

<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>





□ 운영 현황

- o (이용인원)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한(미디어체험·교육·장비대여 등) 누적 이용인원 총 107만명*
 - * 26.2만명(~'08)→14.2만명('09)→18만명('10)→21.7만명('11)→26.8만명('12)
- o (운영방식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 운영 중('09년~)
- o (예산) 연간 운영예산은 약 35억원(부산·광주센터), 직원 수는 총 32명

〈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 활동 〉

구 분	주요 활동				
미디어교육	미디어 체험, 방송 제작장비 활용, 초·중학교 및 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, 미디어 강사 양성 등				
시청자 방송참여지원	캠코더·스튜디오·편집실 등 제작 장비 및 제작 시설 대여, 제작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				
소외계층 미디어	지역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(자막, 화면해설) 서비스				
접근권 제고	제작지원, 미디어 봉사단 운영 등				
미디어 행사	미디어 특강, 영상 공모전, 우수 영상물 상영회 등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참여 관련 지역 행사 개최				

개인정보 보호 강화

□ 추진 배경

3

-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
 - **※ 대선 공약**: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

- (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) 방문자 수가 많은 주요 웹사이트 (일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 1,132개)부터 우선적으로 조사·시정조치
 - ※ 민간 웹사이트의 약 90% (방문자수 기준)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효과 기대
 - 기타 중소·영세 웹사이트는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실시
 - ※ 10,000여개 웹 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지원
- (개인정보 보호 강화)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(예 : 매출액의 일정 비율)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
 - ※ 현행법은 단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나 미흡
 - ※ 한편, 보호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유출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징금 (1억원 이하)을 부과할 수 있어 유명무실화
- (취약분야 집중 점검) 스마트폰 앱 등 신규 취약분야에서 개인정
 보 불법 수집 여부, 보호조치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

④ │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제한

□ 추진 배경

●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통해 신규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고, 사업 주체의 동반성장을 지원

□ 주요 추진과제

- (프로그램 제공 환경개선) 케이블·위성·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(PP)간 채널·프로그램 거래 불공정행위 시정
- (콘텐츠 제공사업 환경개선) 유·무선통신사업자와 CP(Contents Provider)간 불공정 수익배분 관행 개선
 - ※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통사와 CP간 불공정한 수익배분은 규제가능하나, 유선 포털과 CP간 수익배분은 규제근거 미비
- (알뜰폰 사업환경 개선) 알뜰폰 사업자(MVNO)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,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(MVNO)간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

____ 〈 알뜰폰 사업자(MVNO) 〉 _____

- o 기존 이통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(MVNO :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, '11.6월 이후 시행)
 - (사업자 수) '11.6월 13개 → '13.3월 27개(CJ헬로비전, SK텔링크 등)
 - (가입자 수) '11.6월 47.7만명(이통시장 점유율 0.92%) → '13.3월 155만명(2.8%)

Ⅳ. 국정과제 이행계획

□ ○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

□ 추진배경

● 방심위 통신심의 및 포털사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제기

- < 국정과제 주요내용 > —

- ◈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축소하되,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
- ◈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

□ 주요 추진과제

- (통신심의 축소·분쟁조정 강화)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私人간 권리침 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으로 해결
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(시정요구)에서 분쟁조정으로 전환
 -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원 확대(5명→25명), 중재권한 부여 ※ '12년 현황 : 방심위 시정요구 1,572건 / 분쟁조정 69건
- (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 개선) 포털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의제기권 신설
 - 게시자와 피해자 권리 간의 균형 도모
 - ※ 피해자 요청 ⇒ 댓글 임시조치 ⇒ **게시자 이의제기** ⇒ 분쟁조정
 - ※ '12년 포털의 임시조치 현황: 네이버 155,161건, 다음 59,124건, SK컴즈 7,442건

● 인터넷의 자율정화 강화

- 인터넷 윤리: 선플운동 등『아름다운 인터넷세상』캠페인 전개 (6월) 연령별·대상별 맞춤형 윤리교육 강화(초중고 6만명, 교원 2천명 등)
- 사업자 자율 :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음란·도박 등에 대한 자율심의 기능 활성화 (대형 포털 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 중소사업자로 확대)

V. 부처간 협업과제

□ 뉴미디어 사전 동의

o SO·위성방송 등 허가 및 관련 법령 제·개정시 사전동의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규제부담 최소화(미래부)

□ 주파수 관리

o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및 신규·회수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(미래부, 총리실)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

o 방송통신발전기금 소관사항 분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기금 조성·사용의 적정화(미래부)

□ 지상파방송 재송신

o 지상파의 저작권 보호 VS 유료방송의 전송 기능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(미래부)